의 안 번 호		제	ই
의	결	2020.	
연 월	일	(제	회)

의 결 사 항

# 개 별 소 비 세 법 시 행 령 일 부 개 정 령 안

제 출 자	국무위원 〇〇〇 (기획재정부장관)
제출 연월일	2020

법제처 심사 전

#### 1. 의결주문

개별소비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.

### 2.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「개별소비세법」에 따르면 국민경제의 효율적 운용을 위하여 경기조절, 가격 안정, 수급 조정에 필요한 경우에는 개별소비세의 세율을 100분의 30의 범위에서 조정할 수 있는바, 코로나 19로 위축된 소비를 회복시키고 경제 활력 제고를 위해 자동차 개별소비세 세율 30% 인하 조치를 2021년 6월 30일까지로 6개월 간 연장하는 한편,

탄력세율 적용한도를 신설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됨에 따라 자동차 개별소비세 세율인하에 따른 경감세액의 한도를 100만원으로 하여 개별소비세부담의 형평을 제고하려는 것임.

### 3. 주요토의과제

없 음

### 4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: 생략

나. 예산조치 : 별도조치 필요 없음

다. 합 의 : 산업통상자원부 등과 합의되었음

라. 기 타 : 1) 신 · 구조문대비표, 별첨

- 2) 입법예고(2020. 12. 00. ~ 12. 00.) 결과, 특기할 사항 없음
- 3) 행정규제: 규제개혁위원회와 협의 결과, 이견 없음 - 규제 신설·폐지 등, 없음

대통령령 제 호

##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

개별소비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2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"세율은"을 "세율 및 그 한도는"으로 하고, 같은 항 제6호 중 "35"를 "35. 다만, 법 제1조제7항 단서에 따른 한도는 과세물품당 100만원으로 한다."로 한다.

#### 부 칙

제1조(시행일)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- 제2조(탄력세율에 대한 유효기간 등) ① 제2조의2제1항제6호의 개정규정은 2021년 6월 30일까지 효력을 가진다.
- ② 제2조의2제1항제6호의 개정규정은 2021년 6월 30일 이전에 제조장에 서 반출하거나 수입신고하는 분에 한정하여 적용한다.
- 제3조(탄력세율의 적용에 관한 적용례) 제2조의2제1항제6호의 개정규정은 2021년 1월 1일 이후 제조장에서 반출하거나 수입신고하는 분부터적용한다.
- 제4조(세액의 환급 등에 관한 경과조치) 관할 세무서장 또는 세관장은 법 제3조에 따른 납세의무자가 제2조의2제1항제6호의 개정규정에 따

라 세율이 인하된 물품을 2021년 1월 1일부터 이 영 시행일 전일까지 반출하거나 수입신고한 분에 대하여 그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세금계 산서 등 국세청장 또는 관세청장이 정하는 증명서류를 첨부하여 2021 년 4월 25일까지 신고하면 세율이 인하된 분에 해당하는 세액을 환급 하거나 납부하여야 할 세액에서 공제하여야 한다.

## 신・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2조의2(탄력세율) ①법 제1조제	제2조의2(탄력세율) ①
7항에 따라 탄력세율을 적용할	
과세대상과 <u>세율은</u> 다음 각 호	<u>세율 및 그 한도는</u> -
와 같다.	
1. ~ 5. (생 략)	1. ~ 5. (현행과 같음)
	6
<ul><li>6. 별표 1 제5호가목부터 라목 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물품: 해당 물품가격의 1천분의 <u>35</u></li></ul>	<u>35.</u> 다만, 법 제1조제7항 단서에 따른 한도는 과세물품당 100 만원으로 한다.
② (생 략)	② (현행과 같음)

## 〈 의안 소관 부서명 〉

기획재정부 환경에너지세제과

연 락 처

(044) 215 - 4333